

간호사가 알아두어야 할 보건의료법규

이 준 상
(한국의료법학회·고대교수)

간호사 국가시험과목중 의료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보건의약관계법규라 하여 「의료법·전염병예방법·마약법·검역법·의료보험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보건소법」을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외 조산사국가 시험에 필요한 모자보건법이 알아두어야 할 보건의료법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9개법 이외에도 직업상 필요한 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간호사가 필요한 법상식은 많다. 그러므로 간호사와 관계된 법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I. 간호사의 임무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는데 대통령령 즉 의료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1.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제15조 (보건진료원의 자격) ①보건진료원은 간호사·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보건진료원의 위촉) ①보건진료원은 보

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의료취약지역을 근무지역으로 지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군수는 보건진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진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때

3)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10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군수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해서는 안됨)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

5)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은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된자는 해촉된후 1년이내에 보건진료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7조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원은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①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

1)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 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7) 예방접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약품의 투여

②보건의료원은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 :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기타 주민의 보건의료증진에 관한 업무

③보건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의하고 보건의료원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를 5년간 비치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2. 모자보건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보건요원 또는 가족계획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제11조 (안전분만 조치) 시장·군수는 임신부의 안전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하여야 하며, 가정에서 분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조산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피임시술 및 피임제의 보급)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자에게 피임수술을 행하거나 피임약제를 보급할 수 있다.

제13조 (피임시술자의 자격) 피임시술은 의사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피임행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안의 시술에 한한다.

3. 결핵예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4.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II. 간호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할때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즉,

1. 제8조 (*정신병자·정신박약자*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적합한 장애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때

2. 의료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위반하거나, 형법·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체해부 보존법·혈액 관리법·보건소법·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의료보험법·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모자보건법·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마약법·대마관리법 등 보건 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자격정지 처분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면허에 있어서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간호사는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규정을 위반한 때

6.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한 때이다. 또 보건사회부장관은 간호사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1월이상 1년이하) 간호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즉,

① 간호사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때(*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간호업무, *비도덕적 간호업무)

② 정당한 이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③ 기타 의료법 또는 의료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이다.

Ⅲ. 간호사 면허를 가진 양호교사

이때의 양호교사의 의료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의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상기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Ⅳ. 모자보건요원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임신부 및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거나 조산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조산을 하게 한다. 그러나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Ⅴ. 간호기록부 기재사항 및 기록보존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이며 5년간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투약은 환자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투여하는 약물로서 처치방법과 종류가 다양하므로 투약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이 모두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고 투약과 처치에 관한 의사의 지시를 수행하는 업무로 해석된다. 또한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에서도 의사의 지시에 의한업무 이외에 독자적인 업무에 있어서 책임은 간호사 스스로 져야하며, 설령 의사의 지시를 수행한 업무의 궁극적인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나 간호사의 업무수행상 간호사의 실수, 고의 또는 태만으로 야기된 약결과에 대해서는 간호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Ⅵ. 요양의 방법 및 건강관리지도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간호사는 많은 종류의 요양중 간호에 관한 사항만 해당 된다고 본다. ■